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4526 |
|----------|-------|

발의연월일 : 2023. 9. 18.

발의자 : 김교홍 · 정일영 · 오영환

허영 · 임호선 · 이성만

이동주 · 강준현 · 홍익표

안규백 · 조정식 · 문진석

김영주 · 허종식 · 소병훈

윤준병 · 권인숙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5년 7월부터는 9인의 모든 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위원 임명 · 선출 · 지명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음.

위원의 임명절차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여 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음.

다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비

상임 위원에 대해서는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하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은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국회·감사원의 지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활동비·수당·여비 및 그 밖의 실비”로 한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 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u>일당 ·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u> <u>받을 수 있다.</u></p> <p>② (생략)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u>일당 · 여 비 기타의 실비보상</u>에 관하여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p> | <p>제12조(위원의 대우) ①----- ----- -----. ----- <u>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u></p> <p><u>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 집 · 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중앙선 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u></p> <p><u>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u></p> <p><u>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u></p> <p>② (현행과 같음) ③ ----- -----<u>활동비 ·</u> <u>수당 ·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u> ----- -----.</p> |